

# 주간건설 *Review*

545호 2018.8.3(금)



**(사)한국건설경영협회**

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

홈페이지 : <http://www.kfcc.or.kr>, 연 락 처 : 02-771-7936

주 소 : (121-916)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-2103

### ▣ 업계 동향

- ▶ 대우건설, 임직원 자녀 대상 '2018 꿈나무 초대행사'
- ▶ 롯데건설, 하석주 대표 및 임직원 '아이스버킷 챌린지' 동참
- ▶ 포스코건설, 인니서 사랑나눔 사회공헌

### ▣ 건설경제 일반동향

- ▶ 분양보증료 할증제 적용과 영향
- ▶ 건설경기 둔화로 향후 5년간 일자리 32.6만개 소멸

### ▣ 건설 제도·정책 동향

- ▶ 정부,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 등 산하기관에 전달
- ▶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 법안 의원 입법발의
- ▶ 2018년 세법 개정안 발표
- ▶ 조달청,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 발표
- ▶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, 입법예고

# 주간 건설 REVIEW

<기간 : 2018.7.28.(토)~2018.8.3(금)>

제545호 2018.8.3(금)

<업계 동향>

## ◆ 대우건설, 임직원 자녀 대상 ‘2018 꿈나무 초대행사’

- 대우건설은 지난 7월31일부터 8월1일까지 이틀간 여름방학을 맞은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‘2018 꿈나무 초대행사’를 진행하였음
- 이 행사에는 100명의 임직원 자녀가 참여해 광화문 본사를 견학하며 부모님 회사와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, 세운 6-3 오피스현장을 견학한 후 경기도 양평미리내캠프장에서 1박을 하며 물놀이를 비롯해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즐겼음



세운6-3 오피스현장을 방문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대우건설 임직원 자녀들

- 대우건설은 2004년부터 약 1200명의 임직원 자녀를 회사로 초대해왔으며 특히 가족과 휴가를 같이 보내기 어려운 해외 및 국내 현장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
- 대우건설은 부모님 초청행사,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근무가 많은 건설기업 특성상 떨어져 지내는 직원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

## ◆ 롯데건설, 하석주 대표 및 임직원 ‘아이스버킷 챌린지’ 동참

- 7월31일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와 임직원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인근 공원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하였음
-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(이른바 루게릭 병)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,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여름에 시작한 사회 운동으로 머리에 얼음 물을 뒤집어 쓴 참여자가 다음 도전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
- 이날 첫 도전자로는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로부터 지목 당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

나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영구 롯데칠성 대표를 지목하였음

- 이날 행사에는 하석주 대표와 롯데건설 임직원 35명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고 승일재단에 루게릭요양병원 건립 기부금을 전달하였음



- 이날 하석주 대표는 "루게릭병 환우를 돕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임직원들이 함께해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"고 밝혔음

'아이스버킷 챌린지'에 동참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와 임직원들

### ◆ 포스코건설, 인니서 사랑나눔 사회공헌

- 포스코건설은 지난 7월21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,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문화원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였음



- 이번 활동에는 포스코건설 대학생봉사단인 '해피빌더' 27명과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봉사단원 14명이 참여하였음

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라이 까르띠니 극장에서 웨이브 업 페스티벌에 참가한 포스코건설 봉사단원과 현지 학생들

- 해피빌더 봉사단과 인도네시아국립대 한국어과 학생들은 자카르타 스피아부띠에에 있는 제3국립고등학교 학생 400명에게 태권도와 전통공예, 케이팝(K-POP) 등을 가르치고,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드론(무인비행체), VR(가상현실) 등 IT(정보·통신)교육도 실시하였음

- 특히, 지난 7월28일에는 자카르타 중심부 발라이 까르띠니 극장에서 프리아완 무나프 인도네시아 창조경제위원 장관, 이맘 나흐라위 인도네시아 체육청소년부 장관,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와 시민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문화교

류 축제인 '웨이브 업 페스티벌'이 열렸음

- 해피빌더 봉사단은 이날 행사 무대에서 케이팝 댄스, 난타 등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공연을 선보였으며, 포스코건설은 현지 시민들이 투호, 양궁, 한복 등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선보였음
- 한편, 포스코건설이 자카르타에서 시공 중인 '라자왈리 플레이스'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근 스파야부띠 지역 주민들에게 쌀, 세면도구, 응급키트 등 생필품 40세트를 전달하기도 하였음

# 주간 건설 REVIEW

<기간 : 2018.7.28.(토)~2018.8.3(금)>

제545호 2018.8.3(금)

## <건설경제 일반동향>

### ◆ 분양보증료 할증제 적용과 영향

- 7월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는 주택 미분양 지역 미분양 확산 차단과 금융리스크 저감을 위해 '미분양 관리지역 사업장'에 분양보증료 할증(5%)을 신설하였음
- 아파트 분양 때 적용하는 '보험' 성격인 분양보증료에 대해 할증제도를 처음 도입해 미분양 집중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해 과잉공급 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

#### <주요내용>

##### □ 현황

- 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때 HUG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상품
- 분양보증료 할증제 도입은 표면적으로는 부실 가능성이 커진 사업장에 대해 일종의 리스크 비용인 할증료를 받겠다는 조치지만, 결론적으로 사업자 부담이 커져 신규 분양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
- 미분양 관리지역은 정부가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해소도 저조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HUG의 분양보증 본점 심사가 의무화됨
-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% 이상 증가한 지역이거나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직전 1년간 월평균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음

##### □ 분양보증료 할증제 도입 배경

- 정부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분양보증료를 5% 할증하기로 한 이유는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지표가 심상찮다는 인식이 배경
- 미분양이 심한 곳에 분양물량이 또 나와 '악순환의 고리'를 형성하고 분양보증 사고로 이어지며 HUG의 재정적 부실로 확산되기 전에 리스크 차단에 나선 것
-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국 미분양 주택 수치는 작년 8월 5만3130가구에서 올해 6월 기준 6만2050가구로 16.8%나 급증하였음
- 특히, 지방 미분양 물량은 같은 기간 4만3414가구에서 5만2542가구로 21%나 증가하였고,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도 9,928가구에서 1만3348가구로

34.4%나 급증하였음

<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>

(단위 : 호, %, 각 월말 현재)

구 분	'17. 8	'18. 3	'18. 4	'18. 5	'18. 6	
						'17. 8 대비
미분양주택	53,130	58,004	59,583	59,836	62,050	8,920
전월대비증감율	-2.1	-4.8	2.7	0.4	3.7	16.8
수 도 권	9,716	8,707	10,361	9,833	9,508	-208
전월대비증감율	-19.8	-12.7	19.0	-5.1	-3.3	-2.1
비 수 도 권	43,414	49,297	49,222	50,003	52,542	9,128
전월대비증감율	3.0	-3.2	-0.2	1.6	5.1	21.0
준공후미분양	9,928	11,993	12,683	12,722	13,348	3,420
전월대비증감율	1.3	2.4	5.8	0.3	4.9	34.4

자료 : 국토교통부

- 이에 따라 정부는 미분양 지역 아파트가 시장에서 소화될 때까지 새 물량이 나오지 못하도록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료를 할증해 HUG의 리스크도 관리하고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해 나갈 전망이다

□ 제도도입 영향과 향후 전망

-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며 분양 일정을 조정해왔던 건설사들은 분양할증까지 겹쳐지면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전망
-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들 대부분은 최소 3~4년전 해당 지역의 땅을 산 경우가 많고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비싼 이자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분양 일정을 조절했는데 분양 할증료 부담까지 떠맡게 되는 셈
- 정부가 리스크 관리를 내세워 자금줄을 죄면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자금력이 약한 건설사들이 '도미노 파산'했던 전례가 반복될 위험성도 존재
- 이에 따라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많고 아파트 가격 하락이 심한 지역은 오히려 청약요건 완화,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등 '특단의 대책'이 필요하다는 입장
- 다만, 미분양 관리지역을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하면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인식을 투자자에게 심는 '낙인효과'가 나타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주택시장 개선 효과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

◆ 건설경기 둔화로 향후 5년간 일자리 32.6만개 소멸

- 7월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“2/4분기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 분석” 보고서를 통해 지난 2~3년간 국내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최근 급격히 줄

어 들 면 서 국 내 경 제 성 장 세 및 취 업 자 수 증 가 세 둔 화 에 결 정 적 영 향 을 미 치 고 있 는 것 으 로 나 타 났 다 고 발 표 함

<주요내용>

□ 건설투자 증가세 급락에 따른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능 약화

- 건설투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0.3%, 2017년 7.6%, 2018년 전망치 -0.5%로 빠르게 하락 중

<건설투자 증감률 추이>

구분	2015년	2016년		2017년			2018년 <sup>e)</sup>			
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증감률	6.6	9.0	11.4	10.3	9.7	5.8	7.6	0.7	-1.5	-0.5

자료 : 한국은행

- 2016~2017년 상반기 동안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율은 50% 이상(2016년 51.7%, 2017년 상반기 50.5%)를 차지하며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, 올해 1분기에는 성장기여율이 7.1%에 그쳤고, 2분기에는 -3.4%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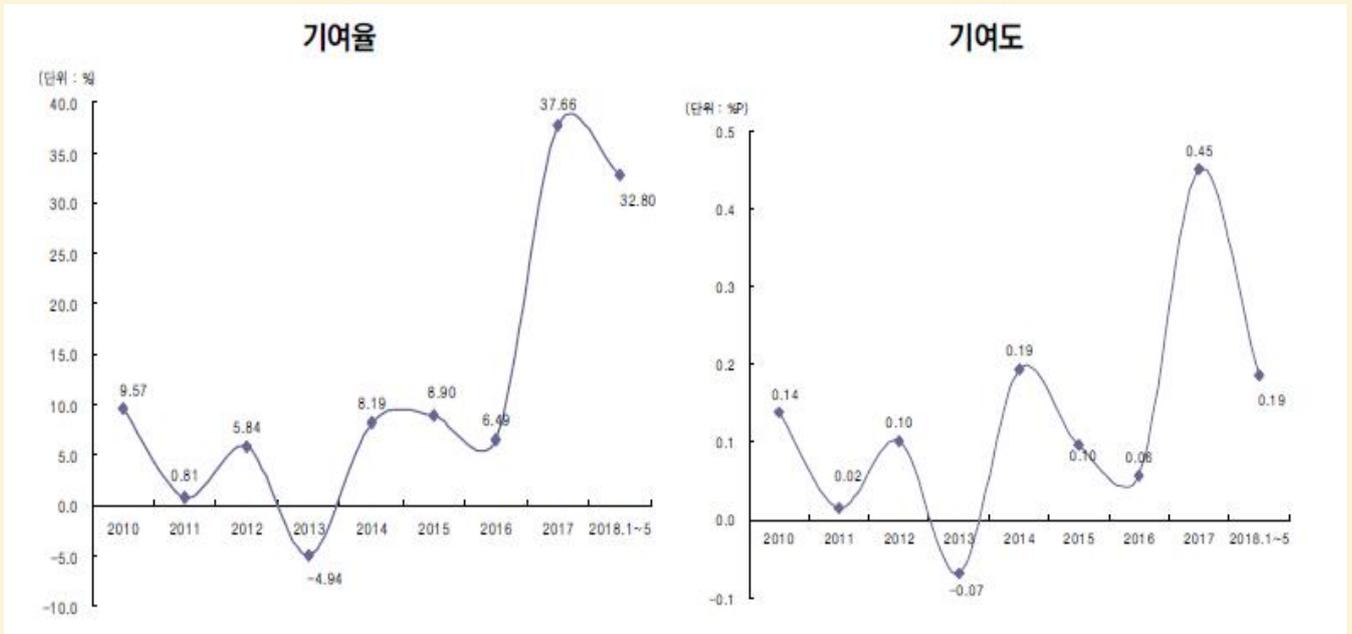
<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및 기여율 추이>



자료 : 한국은행

- 건설투자의 취업자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 역시 2016년 108.2%, 2017년 106.8%에서 2018년 1/4분기에 6.6%로 급락해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

<연도별 건설업 취업자수의 전체 취업자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 및 기여도 추이>



자료 : 통계청

□ 향후 건설투자 감소폭 확대에 따른 영향

- 건설경기가 경제성장 및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
- 단기적으로 2018년 하반기에는 건설투자가 전년동기대비 1.3% 감소하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0.22%p 하락시키고, 취업자수를 2.4만명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
- 중기적으로는 2018년 국내건설수주가 14.7% 감소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산업생산액이 총 52.1조원(연간 평균 10.4조원) 줄어들고 취업자수도 앞으로 5년 동안 총 32.6만명(연간 평균 6.5만명)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
- 한편,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정부예산의 축소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, 향후 4년 동안 산업생산액이 총 46.6조원(연간 평균 11.7조원) 줄고 취업자수도 4년 동안 총 29.2만명(연간 평균 7.3만명) 감소할 것으로 추정

<향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·일자리 전망>

구분		경제	일자리
2018년 하반기 영향 전망(하반기 건설투자 1.3% 감소로 인한 영향)		- 하반기 경제성장률 0.22%p 하락, 산업생산 3.76조원 감소(건설 1.7조, 타산업 2.06조)	- 취업자 수 2.4만명 감소
2018년 이후 약 5년 동안 중기적 영향 전망	2018년 국내 건설수주 14.7% 감소로 인한 영향	- 향후 5년간 산업생산 총 52.1조원 감소(연간 평균 10.4조원 감소)	- 향후 5년간 취업자 수 총 32.6만명 감소(연간 평균 6.5만명 감소)
	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SOC 예산 감소로 인한 영향	- 향후 4년간 산업생산 총 46.6조원 감소(연간 평균 11.7조원 감소)	- 향후 4년간 취업자 수 29.2만명 감소(연간 평균 7.3만명 감소)

자료 : 한국건설산업연구원

# 주간 건설 REVIEW

<기간 : 2018.7.21.(토)~2018.7.27(금)>

제544호 2018.7.27(금)

<건설산업 제도·정책 동향>

## ◆ 정부,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 등 산하기관에 전달

- 8월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설현장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‘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’과 ‘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’을 각각 산하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
-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안도하면서도, “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인정해 주고 있는 ‘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’을 기획재정부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이 필요하며,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불가항력 사유에 ‘폭염’을 추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”이라는 입장

### <‘기재부 지침 및 행안부 요령’ 주요내용>

#### □ 폭염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 허용

- 폭염으로 인해 작업중단이 불가피한 공공공사 현장에 대해서 공사 일시정지와 계약기간 연장, 계약금액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함

#### □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단시 지체상금 부과 유예

- 폭염으로 인해 작업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폭염으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도록 함

## ◆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 법안 의원 입법발의

- 7월31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안을 대표발의함
- 이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인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이 현재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, 주변 시세 급등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우선분양권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른 것

### <개정안 주요내용>

#### □ ‘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’ 변경

현행	개정안
- 감정평가금액 초과 금지	- ‘분양가상한제’에 준하는 방식으로 산정

## ◆ 2018년 세법 개정안 발표

○ 정부는 7월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9개 법률에 대한 '2018년 세법 개정안'을 확정·발표함

### <주요내용>

#### □ 종합부동산세 개편

구 분		현 행		개 정 안		
공정시장 가액비율		80%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 5%p씩 90%까지 인상 ('19) 85% → ('20) 90%</li> </ul>		
세 율	주 택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</li> <li>과표 6억원 초과 0.1~0.5%p 인상</li> <li>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이상* 0.3%p 추가과세</li> <li>*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과세체계인 점을 감안, 인별로 판단</li> </ul>		
		과표	세율	과표	세율	
				2주택이하	3주택이상	
		6억이하	0.5%	6억이하	좌 동	좌 동
		6~12억	0.75%	6~12억	0.85% (+0.1%p)	1.15% (+0.4%p)
		12~50억	1%	12~50억	1.2% (+0.2%p)	1.5% (+0.5%p)
		50~94억	1.5%	50~94억	1.8% (+0.3%p)	2.1% (+0.6%p)
		94억초과	2%	94억초과	2.5% (+0.5%p)	2.8% (+0.8%p)
	종 합 합 산 토 지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.25~1%p 인상</li> </ul>		
		과표	세율	과표	세율	
		15억이하	0.75%	15억이하	1% (+0.25%p)	
		15~45억	1.5%	15~45억	2% (+0.5%p)	
		45억초과	2%	45억초과	3% (+1%p)	
	별 도 합 산 토 지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좌 동</li> </ul>		
		과표	세율			
		200억이하	0.5%			
		200~400억	0.6%			
		400억초과	0.7%			

#### □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

- '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('18년까지 비과세)
-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차등 조정 (60% → 등록사업자: 70%, 미등록사업자: 50%)
-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기본공제를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,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

-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 축소 (3억원 & 60㎡ 이하 → 2억원 & 40㎡ 이하)
- \* (현행)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 과세 (3억원& 60㎡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)

### ◆ 조달청,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 발표

○ 조달청은 7월30일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투명·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‘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’을 마련·발표하고,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‘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’을 개정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

#### <‘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’ 주요 개정내용>

개정 목적	개정 내용
① 기술변별력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설계(기술제안)평가 총점차등제 도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기술경쟁 촉진으로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총점차등제*를 도입해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</li> <li>* 최종 설계점수 산정 후 총점의 5~10% 범위로 설계점수의 폭을 넓히는 제도로써 국토교통부, 국방부, 해양수산부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활용 중</li> </ul> </li> </ul>
②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심의위원의 직무관련 퇴직자 접촉 시 사전신고 의무화</li> <li>■ 입찰자의 심의위원 사전접촉 금지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접촉 금지 기간 및 대상 : (현행) 평가 20일 전부터, 당해 심의위원(10명~20명) → (개선) 평가 75일~150일 전부터, 전체 설계심의분과위원(56명)</li> </ul> </li> <li>■ 심의위원에게 정기적 청렴서한 발송 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의위원에게 정기적으로 청렴서한을 발송하고, 청렴 워크숍을 개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</li> </ul> </li> </ul>
③ 심의회 운영방법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설계심의 토론방법 개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의위원 간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하여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책임을 강화</li> <li>*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및 사유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 조치</li> </ul> </li> <li>■ 설계심의분과위원 풀(POOL) 확대 운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등의 심의위원 풀(POOL)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</li> </ul> </li> </ul>

## ◆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, 입법예고

- 국토교통부는 7월31일 후분양 시행 사업주체 등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 마련,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한 기금지원 제한기준 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‘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

### <개정안 주요내용>

#### □ 후분양 시행 사업주체나 시공자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 마련

-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공정률 60% 이상 후분양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나 시공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#### □ ‘영업정지’로 인한 신규 출자 및 용자 제한

- 영업정지의 경우 6개월 이상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·용자를 제한
- 그 외 6개월 미만 ~ 3개월 이상은 1년간, 3개월 미만 ~ 1개월 초과는 6개월간 신규 출자 및 용자 제한
- 여기에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추가 용자도 허용하지 않고,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처분기간 중에 신규 출자·용자와 추가 용자를 받지 못하도록 함

#### □ ‘벌점’으로 인한 신규 출자 및 용자 제한

- 누계평균벌점은 10점 이상인 경우 해당 반기의 벌점 공개일로부터 2년간 신규 출자 및 용자 제한
- 벌점 10.0 미만 ~ 5.0 이상은 1년간, 5.0 미만 ~3.0 이상은 6개월간 신규 출자 및 용자 제한
- 벌점 1.0 이상은 벌점 공개일로부터 1점당 1개월간 기존에 약정이 완료된 용자금에 대한 추가 용자도 제한하고, 1.0 미만은 출자 및 용자 신청 제한기준 미적용

#### □ ‘영업정지와 ‘벌점’을 동시에 받은 건설에 대한 가중처벌

- 영업정지와 벌점을 동시에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했는데, 실제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면서 벌점 10점 이상일 경우 영업정지 처분일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자·용자와 함께 추가 용자를 제한하도록 함